

행정자치부 주 의 요 구

제 목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미조치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평창군

내 용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르면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(이하 “산림사업보조금”이라 한다.)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, 보조금의 반환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따라서, 보조금의 반환은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이전에 반환을 받거나, 늦어도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동시에 반환되어야 한다.

평창군은 아래 [표] 산림사업지 보조금 반환 미납명세처럼 산림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실행한 조림사업(경관림)지를 단독주택 신축 부지로 사용하도록 산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하였다.

[표] 산림사업지 보조금 반환 미납 명세

연도	보조사업	개 소	타 용 도 전 환내역	납부자명	부과일자	납부기한	부 과 금 액(원)			
							계	국 비	도 비	시·군비
2016	조 림 (경관림)	평창군 ○○면 ○○리 산000	단독주택	○○○	2016.02.02	2016.03.02	2,350,590	1,645,410	211,550	493,630

그런데도, 평창군은 산지의 형질변경시 산림사업보조금을 반환받지 않고 보조사업(조림)의 원래목적 외로 사용(단독주택)하도록 허가함에 따라 2016. 9. 20. 감사일 현재까지 산림사업보조금 반환액 총 2,350,590원(국비 1,645,410원, 도비 211,550원, 시·군비 493,630원)이 미납되어 국비는 「국가채권 관리법」, 도비 및 시·군비는 「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다.

조치할 사항 평창군수는

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 반환 후 산지의 형질변경허가 하시기 바랍니다.